

2009. 9. 23. (수)
제1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6
3.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6. 30.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7. 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9. 22.
- 다. 의안번호 : 2009 - 25

2. 제안이유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하고, 조례로써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목적사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재원의 지원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로써 지원하는 대학의 목적사업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이 없는 용어를 일부 삭제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의 뜻을 명확히 함과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관계법령에 맞게 신설함(안 제1조, 제2조).

- “승강기산업”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비함
 - 지원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관련이 없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
 - “기술혁신지원기관”(안 제2조제2호 삭제)
 - “산·학·연·관 협력”(안 제2조제3호 삭제)
 - 목적조항을 간명화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신설함
 -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안 제2조제4호 신설)
 - “수익용 기본재산”(안 제2조제6호 신설)
 - 현행 제2조제4호(“교육용 기본재산”)를 제5호로 이동
- 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재원의 지원근거에 대한 상위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본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7조
→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고등교육법」 제7조
- 다. 조례로써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목적사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적합하도록 변경함(안 제3조제2항 각 호).
-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
→ 승강기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 승강기산업 기술 연구 장비·시설의 확충 및 활용 촉진
→ 승강기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개선사업
 - 승강기산업 연관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
→ 그 밖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검토보고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대학의 목적사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중 안 제3조(지원 등)제2항제3호에서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인 시설,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또한 경남도립 거창대학 평생교육원에서도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6. 30.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7. 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9. 22.
- 다. 의안번호 : 2009 - 26

2. 제안이유

승강기산업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거창승강기산업밸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됨에 따라 승강기산업체의 밸리 이전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도시로의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등을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원활한 추진과 승강기산업체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승강기산업밸리추진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운영방법, 실무위원회, 운영비 및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다.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한 각종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보조금 지원

-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한 입지 보조금·투자 보조금·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 벨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 감면 및 공유재산 지원

- 승강기산업체의 이전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승강

기산업체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함

○ 행정적 지원

- 유치한 승강기산업체의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을 전담관리관으로 지정·운영함

○ 보조금 지원신청 등

-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함

라. 그 밖에 보조금 지원대상의 사후관리와 자금지원의 취소 및 환수, 포상, 다른 조례의 준용, 시행규칙 등 조례의 절차적·보충적인 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4. 검토의견요지

- 이 제정조례안은 승강기산업체의 벨리 이전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 이 조례는 총 2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수의 책무(안 제3조), 거창승강기산업벨리추진위원회(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 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

보칙(안 제19조부터 안 23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설치 및 기능)에서 거창승강기산업밸리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호의 ‘밸리조성사업의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 행정기관인 거창군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판단되므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14조(보조금 지원)에서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밸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기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나,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과 제2호에서 규정한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밸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의 보조금 지원 없이 지방비로 재원을 조달하여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제2항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밸리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단서조항은 다른 조례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에 관한 근본체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이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이 조례안이 승강기산업의 특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이지만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에 근거하여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제14조(보조금 지원)제1항제2호

-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를
-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 제20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에 1항 이전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라는 문항을 삽입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비고
제1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벨리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u>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u>」 제3조에 따른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벨리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비고
제20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신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 인원규모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미달인원 및 기간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u>이전</u> 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② <1항과 같음> ③ <2항과 같음> ④ <3항과 같음>	

〔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6. 30.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7. 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9. 22.
- 다. 의안번호 : 2009 - 27

2. 제안이유

승강기산업체를 조례로써 지원하는 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로써 지원하는 “기업”의 범위(정의)에 승강기산업체[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공장, 본사, 연구소 포함)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출연·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법인·단체]를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 지원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신설).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제3항제4호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이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검토보고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승강기산업체를 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 ‘기업’이란 정의 내용에 승강기산업체를 추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정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항목 표에 보면 식료품제조업, 제철업,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승강기제조업 등 여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승강기제조업 분야도 기업에서 분류하고 있는 제조업의 한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

안을 개정하여 『승강기산업체』란 관련 용어를 추가로 명시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9. 7.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9.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9. 21.
- 마. 의안번호 : 2009-33

2. 제안이유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준공에 맞추어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의 반환, 위탁관리 등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제명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함.
- 나. 현행 26개 조항의 조례를 6장 26개 조항의 체계로 하여

총칙(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시설의 개방 및 이용(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관리 및 운영(안 제17조 부터 제22조까지), 체육시설의 위탁(안 제23조, 제24조), 보칙(안 제25조, 제26조)으로 구분함.

다. 조례의 목적을 일부 보완하고, 용어의 정의를 신설·보완·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보다 명확히 하여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라.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일원화하되,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5시에 조기개장토록 함(안 제6조).

마. 체육시설을 사용하려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용 또는 연습목적에 대한 사용허가 규정을 삭제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같음토록 하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안 제7조).

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11조 및 별표).

- 전용사용료, 이용(연습)료, 입장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등 6가지 유형의 복잡하고 세분화된 종전의 사용료 규정을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준공과 더불어 종합운동장(천연 잔디)과 보조경기장(인조 잔디), 실내체육관 3개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변경함

- 거창스포츠파크 일원의 시설 중 종합운동장(천연잔디)과 보조경기장(인조잔디)의 사용료를 1일 1회 3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여 신설함
- 실내체육관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전액 면제 대상과 100분의 30 경감대상으로 세분화하고, 국가유공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함(안 제15조).

아.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대상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와 일부 반환하는 경우로 구분하되, 사용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미사용 신고 시기에 따른 기 납부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함(안 제16조).

자.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범위와 위탁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함(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차. 그 밖에 사용료 개정에 따른 적용례, 사용허가 및 위탁

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함(안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4. 검토보고요지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거창스포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 이 조례는 총 2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제한, 운영시간,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용료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체육시설의 관리위탁 및 위탁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사용료)제1항에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의 체육시설에는 종합운동장(천연 잔디), 보조경기장(인조 잔디), 실내체육관만 규정되어 있고,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궁도장 등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기준과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각각의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무료로 하지 않고 유료로 할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 규정을 두어야 하므로

별표의 “거창군 체육시설 사용료”에 골프연습장 등에 대한 부과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현행 조례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마이크 및 확성기, 난방시설),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애드벌룬 등)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사용료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3조(관리위탁)제5항에서 체육시설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제6조(운영시간) 하절기인 “7월부터”를 “6월부터”로 수정
- 제11조(사용료) 단서조항인 “다만, 제23조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 제23조(위탁관리)5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수정하며
-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누락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료를 정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6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하절기인 <u>7월부터</u>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① ----- ----- -----<u>6월부터</u> ----- -----. ②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u>다만,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 -. (단서조항 삭제) ② (개정안과 같음)
제23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u>3년 이내로</u>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u>5년 이내로</u> ----- -----. ⑥ (개정안과 같음)

[별표]

거창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단위 : 원)

개정안							수정안						
시 설 명			사용 기준	사 용 료		비 고	시 설 명			사용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스포츠 파크	종합 운동장 (천연 잔디)	체 육 경 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스포츠 파크	종합 운동장 (천연 잔디)	체 육 경 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체육경 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체육경 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신설〉							종합 운동장 (트랙)			무료	무료	
	보조 경기장 (인조 잔디)	체 육 경 기	“	80,000	100,000			보조 경기장 (인조 잔디)	체 육 경 기	“	80,000	100,000	
		체육경 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체육경 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실내 체육관		체 육 경 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실내 체육관		체 육 경 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체육경 기 외의 행사		50,000	120,000				체육경 기 외의 행사		50,000	120,000	
〈신설〉							골프연습장			월 사용료		70,000	
〈신설〉							테니스장	회원		월 사용료		7,000	
								비회원	일 사용료		4,000		
									월 사용료		20,000		
〈신설〉							게이트볼장					무료	
〈신설〉							족구장					무료	
〈신설〉							궁도장					무료	
〈신설〉							농구장					무료	
〈신설〉							인라인 스케이트장					무료	

※ 전기(조명포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납부